

【별표 29】

상호운용성 적용 항목(제171조 관련)

체계구분		구분	
무기	전력지원		
○	○	운용개념 및 체계특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특성분류 • 운용방식 • 주요 응용기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운용개념도 • 생존성 보장능력
○	○	연동성 및 정보교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연동대상체계 • 정보교환내역 • 특정 상호운용성 수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연동개념도 • 일반 상호운용성 수준 • 수준측정 질의서
○	○	표준 및 아키텍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방정보기술표준 • 표준데이터 • 아키텍처 산출물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방공통컴포넌트 • 아키텍처 작성 • 아키텍처 현행화
○	○	사이버보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정보보호 수준 • 관제체계 구축 • 응용체계 정보보호 • 단말기 정보보호 • 사이버전 대비능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네트워크 정보보호 • 키 관리체계 구축 • 서버 정보보호 • 암호장비 적용
○	○	주파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파수 확보계획 • 전자전 대비능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파수 사용가능성

※ 상호운용성 적용항목별 평가항목은 국방상호운용성 관리지시 별표 5에 따른다.